|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특별납세조사조정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6호  <국세 및 지세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 심화>를 보다 심도 깊이 관철하여 실행하고,특별납세조사조정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업무를 한 단계 더 완전히 하며,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실행계획성과를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협의 또는 안배를 유효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특별납세조정조사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방법>을 제정하였기에 이를 발표하며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부록: 1. 특별납세조정 자가납부세금표  2. 특수관계 인정표  3. 특수관계자거래 인정표  4. 특별납세조사 결론통지서  5.협상내용기록  6. 특별납세조사 초보조정통지서  7.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  8.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절차 개시신청표  9.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협의 세금보충납부(환급)통지서  국가세무총국  2017년 3월 17일  특별납세조사조정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방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과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협의 또는 안배(이하 “세수협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지향하여 특수관계자거래 이익수준 모니터링관리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완전히 하고, 기업 이익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 관리와 특별납세조사조정을 통해 기업의 세법준수를 촉진한다.  제3조 세무기관은 특수관계 신고 심사, 동기자료 관리와 이익수준 모니터링 등 수단을 통해, 기업에 대한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를 실시하고, 기업에 특별납세조정 리스크가 존재함을 발견할 경우, 기업에<세무사항통지서>를 송달하고, 존재하는 세수 리스크를 제시할 수 있다.  기업이 특별납세조정 리스크를 제시 받았거나 또는 스스로 특별납세조정 리스크가 존재함을 발견하는 경우, 스스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스스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 납부하는 경우에는 응당 <특별납세조정 자가납부세금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무기관은 여전히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납세조사조정을 실행할 수 있다.  기업이 세무기관에 특수관계자거래 정가원칙과 방법 등 특별납세조정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세무기관이 특별납세조사를 실시하는경우, 다음의 리스크 특징이 있는 기업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종류 비교적 많은 경우  (2)장기결손, 소규모 이익 또는 비약적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3) 동일 업종의 이익수준을 밑도는 경우  (4) 이익수준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 및 리스크와 서로 대응하지 않거나, 또는 공동 향유하는 수익과 공동 분담하는 원가가 서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5) 저(低)세율 국가(지역)의 특수관계자와 발생한 특수관계자거래인 경우  (6)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동기(同期)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7) 특수관계자로부터 접수한 채권성 투자와 권익성 투자의 비율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한 경우  (8)거주자기업 또는 거주자기업과 중국 주민이 통제하고 실제 조세부담이 12.5%보다 낮은 국가(지역)에 설립된 기업으로 합리적 경영수요가 아닌 이유로 이윤을 분배하지 않았거나 분배금액을 감소한 경우.  (9) 기타 합리적 상업목적을 갖추지 못한 세수계획 또는 안배가 실시된 경우  제5조 세무기관은 입안조사가 확정된 기업에게 <세무검사통지서(1)>를 송달하여야 한다. 입안조사 대상기업이 비거주자기업인 경우, 세무기관은 경내의 특수관계자나 조사와 관련된 경내기업에게 위탁하여 <세무조사통지서(1)>를 송달할 수 있다.  예비회담을 통해 세무기관과의 합의에 도달하였고 이미 세무기관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 • 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이전 년도로 소급 적용하는 기업 또는 세무기관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갱신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잠정적으로 특별납세조정의 조사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이전가격 사전합의와 관련이 없는 연도와 특수관계자거래는 제외한다.  제6조 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사를 실시할 때 피조사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조사와 관련된 기타기업에게 유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피조사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조사와 관련된 기타기업에게 유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세무사항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해당기업이 경외에 소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경내 특수관계자나 조사와 관련된 경내기업에게 위탁하여 해당기업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2）피조사 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조사와 관련된 기타기업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에 <세무검사통지서(2)>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 피조사 기업, 그 특수관계자, 조사와 관련된 기타기업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진실하고 완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서면증거원본을 제공한다. 원본, 정본과 부본은 모두 서면증거원본에 해당한다.원본제공에 확실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원본과 일치함을 대조 확인한 사본, 사진, 요약본 등의 복제문건을 제공할 수 있다. 제공자는 복제문건에“원본과 일치함을 대조 확인하였으며, 원본은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를 명기해야 하고, 동시에 제공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2)관련자가 보관 중인 서면증거원본의 복제문건, 영인본 또는 초록문건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는 복제문건, 영인본 또는 초록문건에“원본과 일치함을 대조 확인함”이라고 명기하고, 명기란에 해당 관련자와 제공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3) 외국어서면증거 또는 외국어 시청각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문번역본을 첨부하여 제공해야 한다.제공자는 중문 번역본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경외의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처를설명하여야 한다.세무기관이 경외 자료의 진실성과완전성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 기업에게 공증기구의 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세무기관이 특별납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법정권한과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서면 또는 전자데이터자료의 검사, 장부조사, 조회, 예금계좌 또는 저축예금계좌조회, 서한발송을 통한 협력 조사, 국제세수정보교환 및 타지역 협력조사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안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록, 녹음, 녹화, 사진촬영 및 복제할 수 있으며 녹음, 녹화 및 사진촬영 전에 증거제출을 요구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록내용은 2명 이상의 조사인원이 서명하고 동시에 증거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사실과 대조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거제출을 요구 받는 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기관의 조사인원(2명 이상)이 이를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9조 전자데이터로서 안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아래의 방식을 채택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1)제공자에게 전자데이터를 서면자료로 인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서면자료 상에 데이터출처, 인쇄장소와 “전자데이터와 일치함을 대조 확인함’을 명기하고, 제공자가 서명날인한다.  (2)유형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전자데이터를 고정시키는 경우, 조사인원과 제공자측 지정인원이 함께 전자데이터를 읽기전용 저장매체에 복제한 후 밀봉하여 보관한다. 밀봉 포장물에는 전자데이터 명칭, 데이터 출처, 제작방법, 제작시기, 제작자, 문건형식 및 크기 등을 명기하고, 동시에 “원시 매개체에 기재된 전자데이터와 일치함을 대조확인함”을 명시하고 제공자가 서명날인한다.  제10조 세무기관이 이전 연도의 장부, 회계증빙, 재무회계보고서와 기타 관련 자료 를리콜(Recall)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조사기업에게 <장부자료 조사수집통지서>를 송달하고, <장부자료 조사수집목록>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이를 대조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 확인한다. 리콜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법정시한 내에 완전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무기관이 조회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명이상 조사인원이 조회하고 <조회(조사)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2조 피조사 당사자 및 증인의 진술 또는 증언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책임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피조사 당사자 및 증인은 서면 또는 구두방식으로 진술하거나 증언을 제공할수 있다. 구두방식으로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경우, 조사인원이 기록, 녹음 및 녹화할 수 있다. 기록은 장기간필적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록하여 인쇄할 수도 있다.진술 혹은 증언은 피조사 당사자 및 증인이 페이지마다 각각 서명날인하도록 한다.  진술 혹은 증언에 피조사 당사자 및 증인의 성명, 직장, 연락처 등기본 정보를 기재하고, 발행일자를 명기하며, 더불어 주민신분증 사본 등 신분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피조사 당사자 및 증인이 구두로 진술 또는 증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인원은 변경부문에 대한 기록을 다시 작성하고 원인을 분명히 기재해야 하며, 피조사 당사자 및 증인이각페이지마다 서명날인 하도록 한다. 피조사 당사자 및 증인이 서면진술 또는 증언을 변경하는 경우, 원본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세무기관은 피조사기업 연도특수관계자업무 거래보고표와 관련 자료를 결합하여,그와 특수관계자와의 특수관계자거래 및 특수관계자거래금액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인정표>와<특수관계자거래인정표>를 작성하며, 피조사기업이 확인하여 서명날인한다. 피조사기업이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세무기관조사인원(2명이상)은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4조 피조사기업이 특별납세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및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내 시정을 명령한다.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법에 의거하여 그 과세소득액을 심사 결정한다.  제15조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조사를 실시할 때, 비교가능성분석을 진행하여야 하고,비교가능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아래 5개 영역을 포함한다. 세무기관은 안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분석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1) 거래자산 또는 노무(서비스) 특징.유형자산의 물리적 특성, 품질,수량 등/ 무형자산의 유형, 거래형식, 보호 정도, 기한, 예상수익 등/노무(서비스)의 성질과 내용/ 금융자산의 특성, 내용,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한다.  (2) 거래 각방이 이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리스크와 사용하는 자산. 기능은 연구개발, 설계, 구매, 가공, 조립, 제조, 유지보수, 유통판매, 마케팅, 광고, 재고관리, 물류, 창고저장, 융자, 관리, 재무, 회계, 법률 및 인력자원관리 등/리스크는투자 리스크, 연구개발 리스크, 구매 리스크, 생산 리스크, 시장 리스크,관리 리스크 및 재무 리스크등/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다.  (3) 계약조항은 거래목적물, 거래수량, 거래가격, 수금 방식과 조건, 화물인도조건,애프터서비스(A/S)범위와 조건, 부가서비스 제공의 약정,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 권리, 계약유효기한, 계약 중지 또는 갱신 권리 등을 포함한다.계약조항 분석시에는 기업의 계약 이행능력과 행위 및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계약조항의 신뢰도 등에 주목해야 한다.  (4) 경제환경은 업종개황, 지리구역, 시장규모, 시장등급, 시장점유율, 시장경쟁정도, 소비자구매력, 상품 또는 노무(서비스)의대체가능성, 생산요소가격, 운송원가, 정부관리통제 및 원가절감, 시장프리미엄 등 지역적 특수요소를 포함한다.  (5) 경영전략은 창의와 혁신, 개발, 다원화 경영, 시너지효과, 리스크 회피 및 시장점유전략 등을 포함한다.  제16조 세무기관은 비교가능성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여 기업의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분석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이전가격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순이익법, 이익분할법 및 기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제17조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은 특수관계자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활동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진행하여 수취하게 되는 가격을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정거래가격으로 본다.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은 모든 유형의 특수관계자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의 비교가능성분석은 거래유형의 차이에 따라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에서 거래자산이나 노무(서비스)의 특성, 계약조건, 경제환경 및 경영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특별히 고찰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사용권 또는 소유권의 양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양도과정은 거래시간과 장소,물품인도조건, 화물인도수속, 지불조건,거래수량,애프터서비스(A/S) 등을 포함한다.  2. 양도단계는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수출단계 등을 포함한다.  3. 양도환경은 민족풍속,소비자선호,정국의 안정도 및 재정,세수,외환정책 등을 포함한다.  4. 유형자산의 성능, 규격, 모델, 구조, 유형, 감가상각법 등을 포함한다.  5. 사용권을 제공하는 시간, 기한, 장소, 비용 수취표준 등을 포함한다.  6. 자산소유자의 자산에 대한 투자지출, 수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2) 금융자산의 양도는 금융자산의 실제보유기한,유동성, 안전성, 수익성을 포함한다.그 중,지분권양도거래의 분석내용에는 회사성질,업무구조,자산구성,소속업종,업종주기,경영모델,기업규모,자산배치와 사용상황, 기업이 처한 경영단계,성장성, 경영리스크,재무 리스크,거래시기,지리구역,지분권관계,과거와 미래의 경영상황,기업의 신용과 명예,세수이익,유동성,경제추이,거시정책,기업수입과 원가구조 및 기타요소가 포함된다.  (3) 무형자산사용권 또는 소유권 양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무형자산의 종류,용도,적용업종,예상수익을 포함한다.  2. 무형자산의 개발투자,양도조건,독점정도,대체가능성,유관 국가의 법률보호를 받는 정도 및 기한,지리적 위치,사용연한,연구개발단계,유지개량 및 갱신의 권리,매입원가와 비용,기능∙리스크상황, 상각방법 및 가치에 영향을 주고 실질적 변동을 발생시키는 기타 특수요소 등.  (4)자금융통은 융자금액, 화폐종류, 기한, 담보, 융자인 신용, 상환방식, 이자계산방법 등을 포함한다.  (5) 노무(서비스)거래는 노무(서비스)성질, 기술요구, 전문화수준, 책임부담, 대금지급조건과 방식, 직접 및 간접원가 등을 포함한다.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가 상술한 영역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차이가 가격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8조 재판매가격법은 특수관계자가 상품을 구매하여 비(非)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에서 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 이익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특수관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공정거래가격으로 본다.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가격= 비(非)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1-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 이익률）  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초이익률= 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매출총이익/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매출액×100%  재판매가격법은 일반적으로 재판매자가 상품의 외형, 성능, 구조를 변경하지 않거나 상표변경 등 실질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가공을 하지 않고 단순가공이나 판매업무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재판매가격법의 비교가능성 분석은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에서 기업이 이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리스크, 사용하는 자산과 계약조항의 차이, 이익률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요소를 특별히 고찰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마케팅, 유통판매, 제품보장 및 서비스기능, 재고 리스크, 기기및 설비의 가치와 사용연한, 무형자산의 사용 및 가치, 가치를 지닌 마케팅형 무형자산, 도매 또는 소매단계, 비즈니스 경험,회계처리 및 관리효율 등을 포함한다.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가 상술한 분야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차이가 이익률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9조 원가가산법은 특수관계자거래로 발생하는 합리적인 원가에 비교가능한 비(非)특수관계자거래의 이익을 가산한 후의 금액을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정거래가격으로 한다.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가격=특수관계자거래로 발생하는 합리적 원가×(1+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원가가산률)  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원가가산률=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매출총이익/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원가×100%  원가가산법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사용권 또는 소유권의 양도, 자금융통, 노무(서비스)거래 등의특수관계자거래에 적용한다.  원가가산법의 비교가능성 분석은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에서 기업이 이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리스크, 사용하는 자산과 계약조항의 차이 및 원가가산률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요소를 특별히 고찰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제조, 가공, 설치 및 테스트기능, 시장 및 외환리스크, 기기 및 설비의 가치와 사용연한, 무형자산의 사용 및 가치, 비즈니스 경험, 회계처리, 생산 및 관리효율 등을 포함한다.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가 상술한 영역의 측면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 해당 차이가 원가가산률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합리적 조정이 불가한 경우, 기타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0조 거래순이익법은 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의 이익 지표로특수관계자거래의 이익을 확정한다. 이익지표는 지급이자와법인세 차감전 이익률, 완전원가가산률, 자산수익률, Berry Ratio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1) 지급이자와법인세 차감전 이익률=지급이자와법인세 차감전 이익/영업수입×100%  (2) 완전원가가산률=지급이자와법인세 차감 순이익/완전원가×100%  (3)자산수익률=지급이자와법인세 차감전 이익/[(연초자산총액+연말자산총액)/2]×100%  (4) Berry Ratio=매출총이익/(영업비용+관리비용)×100%  이익지표는 거래 각방이 이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리스크와 사용하는 자산을 반영하여야 선택하여야 한다. 이익지표계산은 기업의 회계처리에 기초하고, 필요한 경우 지표조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거래순이익법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유형자산 사용권 또는 소유권 양수도, 무형자산 사용권 양수, 노무(서비스)거래 등특수관계자거래에 적용한다.  거래순이익법의 비교가능성 분석은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에서 기업이 이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리스크, 사용하는 자산, 경제환경의 차이와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요소를 특별히 고찰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업종과 시장상황, 경영규모, 경제주기와 제품수명주기, 각 거래에서의 수입, 원가, 비용, 자산의 분배, 회계처리 및 경영관리효율 등을 포함한다.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가 상술한 측면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 해당 차이가 이익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익분할법은 기업과 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자거래에서 함께 실현한 결합이익(실제 또는 예측)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이익금액을 계산한다. 이익분할법은 주로 일반이익분할법과 잔여 이익분할법을 포함한다.  일반이익분할법은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자거래 각방이 이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리스크, 사용하는 자산에 근거하여,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이익분할방식을 선택하여, 각방이 취득해야 할 합리적인 이익을 확정한다. 비교가능 거래정보의 획득이 어렵지만결합이익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경우, 실제상황을 결합하여 가치공헌과 관련된 수입, 원가, 비용, 자산, 직원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특수관계자거래각방의 가치에 대한 공헌도를 분석하여, 이익을 각방 간에 분배한다.  잔여이익분할법은 특수관계자거래 각방의 결합이익에서 각방에게 분배하는 통상적인 이익을 감한 후의잔액을 잔여이익으로 하여, 다시 각방의 잔여이익에 대한 공헌 정도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익분할법은 일반적으로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가 모두 이익창출에 특수하게 공헌하고, 업무가 고도로 정합되어 단독으로 각자의 거래결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자거래에 적용한다.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경우, 경제활동 발생지역과 가치창조지역에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구현하여야 한다.  이익분할법의 비교가능성 분석은 특수관계자거래 각방이 이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리스크, 사용하는 자산, 각방 간의 수입, 원가, 비용 및 자산의 분배, 원가절감, 시장프리미엄 등 지역적 특수요소와 기타 가치공헌요소, 각방의 잔여이익 공헌도 확정에 사용한 정보와 가설조건의 신뢰성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은 원가법, 시장법과 수익법 등의 자산평가방법과 이익과 경제활동 발생지 및 가치창조지역의 상호대응원칙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원가법은 대리 또는 대체원칙에 기초하여 현행 시장가격하에서 하나의 유사한 자산을 창조하기 위해 발생시킨 지출을 통해 평가목적물의 가치를 확정하는 평가방법이다. 원가법은 대체될 수 있는 자산의 가치평가에 적용한다.  시장법은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의 최근 거래가격을 이용한다.직접 비교하거나 유추분석을 통해 평가목적물의 가치를 확정하는 평가방법이다.시장법은 시장에서 평가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비(非)특수관계비교가능 거래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자산가치평가에 적용한다.  수익법은 평가목표물의 미래예상수익의 현재가치를 통해 그 가치를 확정하는 평가방법이다. 수익법은 기업의 전체 자산과 미래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단일자산의 평가에 적용한다.  제23조 세무기관이 피조사기업의 특수관계자거래를 분석 평가하는 경우, 거래 각방의 기능•리스크분석평가에 기초하여 기능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방을 피시험대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제24조 세무기관은 비교가능성 분석을 진행할 때우선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며 비(非)공개정보도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세무기관이 피조사기업의 특수관계자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 평가할 때,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산술평균법, 가중평균법 또는 사분위법 등 통계방법을 선택 할 수 있고,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다년간 평균하여 비교가능 기업이익 또는 가격의 평균액 또는 4분위 구간을 계산한다.  세무기관은 비교가능 이익수준 또는 비교가능 가격을 기준으로 피조사기업의 각 년도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해 매년 테스트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사분위법을 채택하여 기업이익수준을 분석 평가할 때, 기업의 실제이익수준이 비교가능 기업이익율 구간의 중간값 보다 적은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값 보다 적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제26조 세무기관이 피조사기업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내료가공(원재료를 무상제공하는 가공무역 방식)업무를 분석 평가할 때, 비교가능기업이 동종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이윤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경우,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고 무상으로 제공된(不作價) 재료와 설비가액을 환원한다. 기업이 내료가공 제품의 전체 밸류체인(Value Chain) 관련 자료를 진실하고 완전하게 제공하여 각 특수관계자의 전체 이윤수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피조사기업과 비교가능기업의재료 환원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의 점용차이에 대하여 비교가능성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이윤수준 조정정도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교가능기업을 다시 선택해야 한다.  본 조 제1관을 제외하고, 운영자본 점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차이에 대해 조정하지 않는다.  제27조 세무기관이 피조사기업의 특수관계자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 평가할 때, 선택한 비교가능기업과 피조사기업이 다른 경제환경에 처해있는 경우, 원가절감, 시장프리미엄 등 지역적 특수요소를 분석해야 하며, 또한 합리적인 이전가격 방법을 선택하여 지역적 특수요소의이윤에 대한 공헌도를 확정해야 한다.  제28조 기업이 경외 특수관계자를 위해 내료가공(원재료를 무상제공하는 가공무역 방식) 또는 진료가공(원재료를 유상제공하는 가공무역 방식) 등 단일한 생산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유통판매, 계약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이윤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술한 기업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특수관계 신고와 동기(同期)자료 관리 관련사항을 더욱 완전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42호) 의 동기(同期)자료 준비기준에 해당하는 지와 관계없이, 모두 결손연도에 대한 동기(同期)자료 현지파일을 준비한다. 세무기관은 상술한 기업의 현지파일을 중점 심사하고,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상술한 기업이 의사결정 실책, 조업부족, 제품판매부진, 연구개발 실패 등 사유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와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세무기관이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기업이 획득하는 수익과 그가 이행한 기능 또는 부담한 리스크가 서로 대응되는 지를 확정해야 한다.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 간의 은닉된 특수관계자거래가 국가 전체 세수수입의 감소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은닉된 거래를 환원시켜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간에 상계처리한 특수관계자거래가 국가 전체 세수수입의 감소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상계처리한 거래를 환원시켜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의 무형자산가치에 대한 공헌정도 및 상응하는 수익분배를 판정할때에는 기업이 소속된 기업집단의 글로벌 운영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각자가 무형자산 개발, 가치제고, 유지, 보호, 응용 및 보급 과정에서 가치창출에 공헌한 정도와 무형자산 가치의 실현방식, 무형자산과 집단 내 기타 비즈니스의 기능, 리스크 및 자산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이 무형자산소유권만 보유하고 있고 무형자산 가치에 대해 공헌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형자산 수익분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무형자산의 형성과 사용과정에서 자금을 제공하였으나 유관 기능의 이행과 상응하는 리스크 분담에 실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자금 원가수익만 취득해야 한다.  제31조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가 무형자산 사용권을 양도 또는 양수하여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는 아래 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적시에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형자산가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영업관례에 따라 비(非) 특수관계자 간의 비교가능거래에 특허권사용료 조정메커니즘이 존재하여야 하는 경우  (3) 무형자산 사용과정 중,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행하는 기능및 부담하는 리스크 또는 사용하는 자산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4)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가무형자산의 후속개발, 가치상승, 유지, 보호, 응용과 보급을 진행하여 공헌하였으나 합리적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  제32조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가 무형자산사용권을 양도 또는 양수하여 수취 또는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는 무형자산이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에게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익과 서로 대응되어야 한다.경제적 이익과 서로 대응되지 않아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또한 독립거래원칙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이미 세전 공제한 전액을 기준으로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기업이 무형자산 소유권만 보유하고 있고 가치창출에 대한 공헌이 없는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불하고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이미 세전공제한 전액을 기준으로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기업이융자상장(Financing Listing)을 주요 목적으로 경외에 설립한 지주회사 또는 융자회사가 융자상장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대이익을 경외의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사용료로 지급하고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이미 세전공제한 전액을 기준으로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노무(서비스)거래가 발생하여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가 독립거래원칙이 부합되지 않고,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독립거래원칙의 부합하는 특수관계자 노무(서비스)거래는 수익성(受益性)노무(서비스)거래이어야 하며, 또한 비(非)특수관계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영업관례와 공정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수익성 노무(서비스)는 노무(서비스)접수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고, 비(非)특수관계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 하에서 구매를 원하거나 또는 자가실시를 희망하는 노무(서비스)활동을 의미한다.  제35조 기업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비(非)수익성 노무(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이미 세전공제한 전액을 기준으로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비(非)수익성 노무(서비스)는 주로 다음의 상황을 포함한다.  (1)노무(서비스)접수자가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접수를 받아 이미 구매하였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노무(서비스)활동  (2) 노무(서비스)접수자가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접수를 받아, 노무(서비스)접수자의 직접 또는 간접 투자자의 투자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제, 관리, 감독 등의 노무(서비스)활동.해당 노무(서비스)활동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동사회활동, 주주회의 활동, 감사회활동과 주식발행 등 주주에 대한 서비스 활동  2. 노무(서비스)접수자의 직접 또는 간접 투자자, 그룹본사와 지역본부의 경영보고서 또는 재무보고서 작성 및 분석과 관련된 활동  3. 노무(서비스)접수자의 직접 또는 간접 투자자, 그룹본사와 지역본부의 경영 및 자본 운영과 관련된 자금모금활동  4. 그룹 의사결정, 모니터링, 통제,복종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재무, 회계, 인사, 법무 등 활동  5. 기타유사상황  (3) 노무(서비스)접수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접수하였으나 그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고, 기업집단 소속으로 초과수익을 취득한 노무(서비스)활동. 해당 노무(서비스)활동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노무(서비스)접수자에게 자원통합효과의 규모효과(Scale Effect)를 유발하는 법률형식의 변경, 채무구조조정, 지분권인수, 자산인수, 합병, 분리 등 그룹의 구조조정 활동  2. 기업집단의 신용평가등급 상승으로 인해 노무(서비스)접수자에게 유발되는 융자원가의 하락 등 이익과 관련한 활동  3. 기타 유사상황  (4) 노무(서비스)접수자가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접수를 받아, 이미 기타 특수관계자거래에서 보상한 노무(서비스)활동. 해당 노무(서비스)활동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특허권사용료 지급과정에서 보상하는 특허권(專利權) 또는 비(非)특허기술관련 서비스  2. 대출이자에서 지급과정에서 보상하는 대출 관련 서비스  3. 기타유사상황  (5)노무(서비스)접수자가 이행한 기능 및 부담한 리스크와 무관하거나 또는 노무(서비스) 접수자의경영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관계노무(서비스)활동  (6)기타 노무(서비스)접수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거나 또는 비(非) 특수관계자가 구매를 원하지 않거나 실시를 희망하지 않는 관련노무(서비스)활동  제36조 기업이 접수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수익성 노무(서비스)는 노무(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 노무(서비스)제공자의 기능, 리스크, 원가와 비용, 노무(서비스)접수자의 수익상황, 시장환경, 거래쌍방의 재무상황 및 비교가능거래의 가격결정상황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본 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고,아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특수관계노무(서비스)가 각 노무(서비스)접수자 및 노무(서비스)항목을 정산단위로 유관 노무(서비스) 원가비용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노무(서비스)접수자 및 노무(서비스)항목의 합리적인 원가비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확정하여야 한다.  (2) 특수관계노무(서비스)가 각 노무(서비스)접수자 및 노무(서비스)항목을 정산단위로 유관 노무(서비스)원가비용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합리적인 표준과 비율을 채택하여 각 노무(서비스)접수자에게 분배하고, 분배한 원가비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확정하여야 한다. 분배표준은 노무(서비스)성격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영업수익, 운영자산, 인원 수, 인원급여, 설비사용량, 데이터사용량, 근무시간 및 기타 합리적 지표를 채택할 수 있으며, 분배결과는 노무(서비스)접수자의 수익정도와 서로 대응되어야 한다. 비(非)수익성 노무(서비스)와 관련된 원가비용 지출은 분배기준금액(基數)으로 계상할 수 없다.  제37조 기업이 기능을 이행하지 않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없는 경외의 특수관계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이미 세전공제한 전액을 기준으로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 실제조세부담이 동일한 경내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가 국가 전체 세수수입의 감소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특별납세조정을 하지 않는다.  제39조 조사를 진행하여 세무기관이 기업에 특별납세조정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납세조사의 결론을 내리고 기업에게 <특별납세조사 결론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 조사를 진행하여 세무기관이 기업에 특별납세조정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추산, 논증, 비교가능성 분석에 기초하여 특별납세조사조정방안 제정  (2)조정방안 제정 및 기업과의 협상담판에 근거하여 쌍방이 모두 지정 주협상자를 지정해야 한다. 조사인원은 <협상내용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쌍방의 주협상자가 서명 확인한다. 기업에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기관 조사인원(2명 이상)이 이를 명기해야 한다. 기업이 협상담판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에 <특별납세조사 초보조정통지서>를 송달한다.  (3)협상담판과정에서 기업이 조정방안제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진일보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세무기관은 자료를 수령한 후에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심의결론을 내려야 한다. 심의결론에 근거하여 특별납세조정 진행이 필요할 경우, 세무기관은 초보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에게 <특별납세조사 초보조정통지서>를 송달한다.  (4)기업이 <특별납세조사 초보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기업의 의견을 접수한 후 다시 협상 및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론에 근거하여 특별납세조정 진행이 필요하고 최종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에게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5)기업이 <특별납세조사 초보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규정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의제기 후협상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세무기관 심의 후 채택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초보조정방안을 최종조정방안으로 정하여, 기업에게 <특별납세조사조정통지서>를 송달한다.  제41조 기업이 <특별납세조사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특별납세조사조정통지서>에 따라 세금, 이자, 체납금을 납부 또는 완납하거나 또는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법에 의거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국가세무총국이 송달한 <특별납세조사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상급 국가세무국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한다.기업이 지방세무국이 송달한 <특별납세조사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상급 지방세무국 또는 본급(本級)인민정부를 선택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해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하고, 기업이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공제한 세금을 조정하지 않는다.  제43조 기업은 <특별납세조사조정통지서>송달 전에 스스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특별납세조정 자가납부세금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해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거래가 발생하여 추가 징수한 기업소득세에 대해서는1일 단위로 이자를 추가 징수한다.  특별납세조사조정으로 인해 추가 납부하는 세금은,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귀속연도의 선후순서에 따라 추가납부세금의 귀속연도를 확정하고,국고입고일을 종료일로 하여 추가 징수 할 이자액을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1)기업이 <특별납세조사조정통지서> 송달하기 전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송달 후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세금귀속 납세연도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세금을 납부 또는 추가 납부한 날까지 추가징수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기업이 <특별납세조사조정통지서>의 세금 추가 납부기한을 초과하였으나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세금 추가납부 기한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하고, 체납금 추가징수기간에는 이자를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2)이자율은 세금귀속납세연도 12월 31일에 공표한것과 세금 추가납부 기간 동기(同期)의 중국인민은행 인민폐 대출기준금리(이하 “기준금리”)에 5%를 가산해 계산하고, 1년 365일을 기준으로1일 이자율을 환산한다.  (3)기업이 관련규정에 따라 동기(同期)자료 및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동기(同期)자료 준비가 필요치 않으나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타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오직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세무기관 조사를 거쳐, 기업의 실제 특수관계자거래액이 동기(同期)자료 준비기준에 도달하였으나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동기(同期)자료를 제공하지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금을 보충징수하고 이자도 추가 징수하며 본 조 제2관 제2항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 기업이 스스로 보충세금을 조정하여 주동적으로 동기(同期)자료 등 유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유관 규정에 따라 동기(同期)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나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타 유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해 스스로 조정한 보충세금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추가 징수한다.  제46조 피조사기업이 세무기관이 특별납세조사 조정을 실시하는 기간에 경영주소지 변경 또는 세무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조사안건 종결 전에 원칙적으로 세무변경 및 말소수속을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제47조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세수협정의 관련 규정에 근거,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이 신청하거나 또는 세수협정 체약상대국 세무주관당국의 청구에 따라 상호협상절차를 개시하고, 세수협정 체결상대국 세무주관당국과 협상담판을 전개하여, 특별납세조정사항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회피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상호협상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쌍방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 안배의 협상과 체결  (2) 세수협정 체약 일방국이 특별납세조사조정을 실시하여 다른 일방에게 상응하는 조정을 야기한 협상담판  제48조 기업이 상호협상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 세수협정규정기한 내 국가세무총국에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절차 개시신청표>와 특별납세조정사항에 관한 유관 설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이 직접 대면하여 상술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날이 신청일이고,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이 상술한 자료를 수령한 날이 신청일이다.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이 제출한 상술한 자료를 수령한 후, 세수협정 관련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협상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에 자료를 보충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 세수협정 체약상대국 세무주관당국이 상호협상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은 정식 서한을 수령한 후, 세수협정 관련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협상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이 세수협정 체약상대국 세무주관당국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하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국에 자료를 보충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는 주관세무기관을 통해 관련된 경내기업에 조사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국가세무총국이 상호협상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성(省)세무기관에 통지하고, 세수협정 체약상대국세무주관당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특별납세조정사항을 책임지는 주관세무기관은 서면통지를 수령한 후 15 업무일 이내에 기업에게 상호 협상 절차를 개시하는 <세무사항통지서>를 송달한다  제51조 상호협상절차에서, 세무기관은 기업에게 진일보한 자료 보충과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52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이 신청하거나 또는 세수협정 체약상대국세무주관당국의 상호협상절차 개시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1)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가 세수협정 임의 일방체약국의 세수 거주자가 아닌 경우  (2)특별납세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이나 청구를 하는 경우  (3)신청이나 청구가 사실 또는 법률적 근거가 명백하게 결여된 경우  (4)신청이 세수협정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특별납세조정안건이 종결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종결되었으나 기업이 미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53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은 상호협상절차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기업이 상호협상절차 일시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2)세수협정 체약상대국 세무주관당국이 상호협상절차 일시 중지를 청구하는 경우  (3)다른 피조사기업의 조사조정결과를 근거로 신청하여야 하는 안건이나 다른 피조사기업이 조사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상호협상절차를 일시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경우  제54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은 상호협상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1)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가 안건과 관련된 필요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및 불완전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 대응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2)기업이 상호협상절차철회 또는 정지를 신청한 경우  (3) 세수협정 체약상대국 세무주관당국이 상호협상절차를 철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4) 기타 상호협상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경우  제55조 국가세무총국이 상호협상절차의 일시 중지 또는 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성(省)세무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납세조정사항을 책임지는 주관세무기관은 서면통지를 수령한 후 15 업무일 내에 기업에게 상호협상절차의 일시 중지 또는 정지에 관한<세무사항통지서>를 송달한다.  제56조 국가세무총국과 세수협정 체약상대국 세무주관당국은 상호협상협의를 체결한 후, 서면으로 성(省)세무기관에 통지하고, 상호협상협의서를 첨부 발송하여야 한다. 특별납세조정사항을 책임지는 주관세무기관은 서면통지를 수령한 후 15 업무일 내에 기업에게 <세무사항통지서>를 송달하고, 상호협상협의서를 첨부 발송하여야 한다. 세금보충납부(환급)이 필요한 경우,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협의 세금보충납부(환급) 통지서> 또는 <이전가격 사전합의 세금보충납부(환급)통지서>를 첨부 발송하고 아울러 세금보충납부(환급)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이 외화로 계산된 경우 상호협상협의서가 기업에게 송달된 날의 지난 달 마지막 일자 인민폐환율중간값을 기준으로 인민폐로 환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한다.  보충납부세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 징수해야 하며,<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2조 규정의 인민폐대출기준이자율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57조 각급 세무기관은 세수협정 체약상대국 세무주관당국, 기업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리인 등이 상호협상과정에서 제공한 관련자료에 대해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58조 기업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리인 등이 상호협상 중 거짓을 꾸미거나 또는 기타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9조 기업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에 상호협상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자료는 중문과 영문문건을 동시에 채택하여야 하며,기업이 세수협정 체약쌍방의 세무주관당국에 제출한 자료내용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60조 세수협정조항해석 또는 집행과 관련된 상호협상절차는<국가세무총국의 <세수협정 상호협상절차 실시방법>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3년제56호)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1조 본 방법 시행 전에 이미 수리하였으나 아직 타결되지 않는 상호협상안건은 본 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2조 본 방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시범시행)>(국세발[2009]2호문건 인쇄발행) 제4장, 제5장, 제11장과 제12장, <국가세무총국의 이전가격 추적관리 유관 문제 강화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188호), <국가세무총국의 크로스보더(Cross border)특수관계자거래 모니터링과 조사 강화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363호), <국가세무총국의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제54호),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이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기업소득세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16호)는 동시 폐지한다.  첨부: 1. 특별납세조정 자가납부세금표  2. 특수관계인정표  3. 특수관계자거래인정표  4. 특별납세조사 결론통지서  5.협상내용기록  6. 특별납세조사 초보조정통지서  7.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  8.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절차 개시신청표  9.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협의세금보충납부(환급)통지서 |  |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特别纳税调查调整及相互协商程序管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6号  　　为深入贯彻落实《深化国税、地税征管体制改革方案》，进一步完善特别纳税调查调整及相互协商程序管理工作，积极应用税基侵蚀和利润转移（BEPS）行动计划成果，有效执行我国对外签署的避免双重征税协定、协议或者安排，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的有关规定，国家税务总局制定了《特别纳税调查调整及相互协商程序管理办法》，现予以发布，自2017年5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附件：1.特别纳税调整自行缴纳税款表  2.关联关系认定表  3.关联交易认定表  4.特别纳税调查结论通知书  5.协商内容记录  6.特别纳税调查初步调整通知书  7.特别纳税调查调整通知书  8.启动特别纳税调整相互协商程序申请表  9.特别纳税调整相互协商协议补（退）税款通知书  国家税务总局  2017年3月17日  特别纳税调查调整及相互协商程序管理办法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简称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简称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以及我国对外签署的避免双重征税协定、协议或者安排（以下简称税收协定）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税务机关以风险管理为导向，构建和完善关联交易利润水平监控管理指标体系，加强对企业利润水平的监控，通过特别纳税调整监控管理和特别纳税调查调整，促进企业税法遵从。  　　第三条 税务机关通过关联申报审核、同期资料管理和利润水平监控等手段，对企业实施特别纳税调整监控管理，发现企业存在特别纳税调整风险的，可以向企业送达《税务事项通知书》，提示其存在的税收风险。  　　企业收到特别纳税调整风险提示或者发现自身存在特别纳税调整风险的，可以自行调整补税。企业自行调整补税的，应当填报《特别纳税调整自行缴纳税款表》。  　　企业自行调整补税的，税务机关仍可按照有关规定实施特别纳税调查调整。  　　企业要求税务机关确认关联交易定价原则和方法等特别纳税调整事项的，税务机关应当启动特别纳税调查程序。  　　第四条 税务机关实施特别纳税调查，应当重点关注具有以下风险特征的企业：  　　（一）关联交易金额较大或者类型较多；  　　（二）存在长期亏损、微利或者跳跃性盈利；  　　（三）低于同行业利润水平；  　　（四）利润水平与其所承担的功能风险不相匹配，或者分享的收益与分摊的成本不相配比；  　　（五）与低税国家（地区）关联方发生关联交易；  　　（六）未按照规定进行关联申报或者准备同期资料；  　　（七）从其关联方接受的债权性投资与权益性投资的比例超过规定标准；  　　（八）由居民企业，或者由居民企业和中国居民控制的设立在实际税负低于12.5%的国家（地区）的企业，并非由于合理的经营需要而对利润不作分配或者减少分配；  　　（九）实施其他不具有合理商业目的的税收筹划或者安排。  　　第五条 税务机关应当向已确定立案调查的企业送达《税务检查通知书（一）》。被立案调查企业为非居民企业的，税务机关可以委托境内关联方或者与调查有关的境内企业送达《税务检查通知书（一）》。  　　经预备会谈与税务机关达成一致意见，已向税务机关提交《预约定价安排谈签意向书》，并申请预约定价安排追溯适用以前年度的企业，或者已向税务机关提交《预约定价安排续签申请书》的企业，可以暂不作为特别纳税调整的调查对象。预约定价安排未涉及的年度和关联交易除外。  　　第六条 税务机关实施特别纳税调查时，可以要求被调查企业及其关联方，或者与调查有关的其他企业提供相关资料：  　　（一）要求被调查企业及其关联方，或者与调查有关的其他企业提供相关资料的，应当向该企业送达《税务事项通知书》，该企业在境外的，税务机关可以委托境内关联方或者与调查有关的境内企业向该企业送达《税务事项通知书》；  　　（二）需要到被调查企业的关联方或者与调查有关的其他企业调查取证的，应当向该企业送达《税务检查通知书（二）》。  　　第七条 被调查企业及其关联方以及与调查有关的其他企业应当按照税务机关要求提供真实、完整的相关资料：  　　（一）提供由自身保管的书证原件。原本、正本和副本均属于书证的原件。提供原件确有困难的，可以提供与原件核对无误的复印件、照片、节录本等复制件。提供方应当在复制件上注明“与原件核对无误，原件存于我处”，并由提供方签章；  　　（二）提供由有关方保管的书证原件复制件、影印件或者抄录件的，提供方应当在复制件、影印件或者抄录件上注明“与原件核对无误”，并注明出处，由该有关方及提供方签章；  　　（三）提供外文书证或者外文视听资料的，应当附送中文译本。提供方应当对中文译本的准确性和完整性负责；  　　（四）提供境外相关资料的，应当说明来源。税务机关对境外资料真实性和完整性有疑义的，可以要求企业提供公证机构的证明。  　　第八条 税务机关实施特别纳税调查时，应当按照法定权限和程序进行，可以采用实地调查、检查纸质或者电子数据资料、调取账簿、询问、查询存款账户或者储蓄存款、发函协查、国际税收信息交换、异地协查等方式，收集能够证明案件事实的证据材料。收集证据材料过程中，可以记录、录音、录像、照相和复制，录音、录像、照相前应当告知被取证方。记录内容应当由两名以上调查人员签字，并经被取证方核实签章确认。被取证方拒绝签章的，税务机关调查人员（两名以上）应当注明。  　　第九条 以电子数据证明案件事实的，税务机关可以采取以下方式进行取证：  　　（一）要求提供方将电子数据打印成纸质资料，在纸质资料上注明数据出处、打印场所，并注明“与电子数据核对无误”，由提供方签章；  　　（二）采用有形载体形式固定电子数据，由调查人员与提供方指定人员一起将电子数据复制到只读存储介质上并封存。在封存包装物上注明电子数据名称、数据来源、制作方法、制作时间、制作人、文件格式及大小等，并注明“与原始载体记载的电子数据核对无误”，由提供方签章。  　　第十条 税务机关需要将以前年度的账簿、会计凭证、财务会计报告和其他有关资料调回检查的，应当按照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有关规定，向被调查企业送达《调取账簿资料通知书》，填写《调取账簿资料清单》交其核对后签章确认。调回资料应当妥善保管，并在法定时限内完整退还。  　　第十一条 税务机关需要采用询问方式收集证据材料的，应当由两名以上调查人员实施询问，并制作《询问（调查）笔录》。  　　第十二条 需要被调查当事人、证人陈述或者提供证言的，应当事先告知其不如实陈述或者提供虚假证言应当承担的法律责任。被调查当事人、证人可以采取书面或者口头方式陈述或者提供证言，以口头方式陈述或者提供证言的，调查人员可以笔录、录音、录像。笔录应当使用能够长期保持字迹的书写工具书写，也可使用计算机记录并打印，陈述或者证言应当由被调查当事人、证人逐页签章。  　　陈述或者证言中应当写明被调查当事人、证人的姓名、工作单位、联系方式等基本信息，注明出具日期，并附居民身份证复印件等身份证明材料。  　　被调查当事人、证人口头提出变更陈述或者证言的，调查人员应当就变更部分重新制作笔录，注明原因，由被调查当事人、证人逐页签章。被调查当事人、证人变更书面陈述或者证言的，不退回原件。  　　第十三条 税务机关应当结合被调查企业年度关联业务往来报告表和相关资料，对其与关联方的关联关系以及关联交易金额进行确认，填制《关联关系认定表》和《关联交易认定表》，并由被调查企业确认签章。被调查企业拒绝确认的，税务机关调查人员（两名以上）应当注明。  　　第十四条 被调查企业不提供特别纳税调查相关资料，或者提供虚假、不完整资料的，由税务机关责令限期改正，逾期仍未改正的，税务机关按照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有关规定进行处理，并依法核定其应纳税所得额。  　　第十五条 税务机关实施转让定价调查时，应当进行可比性分析，可比性分析一般包括以下五个方面。税务机关可以根据案件情况选择具体分析内容：  　　（一）交易资产或者劳务特性，包括有形资产的物理特性、质量、数量等；无形资产的类型、交易形式、保护程度、期限、预期收益等；劳务的性质和内容；金融资产的特性、内容、风险管理等；  　　（二）交易各方执行的功能、承担的风险和使用的资产。功能包括研发、设计、采购、加工、装配、制造、维修、分销、营销、广告、存货管理、物流、仓储、融资、管理、财务、会计、法律及人力资源管理等；风险包括投资风险、研发风险、采购风险、生产风险、市场风险、管理风险及财务风险等；资产包括有形资产、无形资产、金融资产等；  　　（三）合同条款，包括交易标的、交易数量、交易价格、收付款方式和条件、交货条件、售后服务范围和条件、提供附加劳务的约定、变更或者修改合同内容的权利、合同有效期、终止或者续签合同的权利等。合同条款分析应当关注企业执行合同的能力与行为，以及关联方之间签署合同条款的可信度等；  　　（四）经济环境，包括行业概况、地理区域、市场规模、市场层级、市场占有率、市场竞争程度、消费者购买力、商品或者劳务可替代性、生产要素价格、运输成本、政府管制，以及成本节约、市场溢价等地域特殊因素；  　　（五）经营策略，包括创新和开发、多元化经营、协同效应、风险规避及市场占有策略等。  　　第十六条 税务机关应当在可比性分析的基础上，选择合理的转让定价方法，对企业关联交易进行分析评估。转让定价方法包括可比非受控价格法、再销售价格法、成本加成法、交易净利润法、利润分割法及其他符合独立交易原则的方法。  　　第十七条 可比非受控价格法以非关联方之间进行的与关联交易相同或者类似业务活动所收取的价格作为关联交易的公平成交价格。可比非受控价格法可以适用于所有类型的关联交易。  　　可比非受控价格法的可比性分析，应当按照不同交易类型，特别考察关联交易与非关联交易中交易资产或者劳务的特性、合同条款、经济环境和经营策略上的差异：  　　（一）有形资产使用权或者所有权的转让，包括：  　　1.转让过程，包括交易时间与地点、交货条件、交货手续、支付条件、交易数量、售后服务等；  　　2.转让环节，包括出厂环节、批发环节、零售环节、出口环节等；  　　3.转让环境，包括民族风俗、消费者偏好、政局稳定程度以及财政、税收、外汇政策等；  　　4.有形资产的性能、规格、型号、结构、类型、折旧方法等；  　　5.提供使用权的时间、期限、地点、费用收取标准等；  　　6.资产所有者对资产的投资支出、维修费用等。  　　（二）金融资产的转让，包括金融资产的实际持有期限、流动性、安全性、收益性。其中，股权转让交易的分析内容包括公司性质、业务结构、资产构成、所属行业、行业周期、经营模式、企业规模、资产配置和使用情况、企业所处经营阶段、成长性、经营风险、财务风险、交易时间、地理区域、股权关系、历史与未来经营情况、商誉、税收利益、流动性、经济趋势、宏观政策、企业收入和成本结构及其他因素;  　　（三）无形资产使用权或者所有权的转让，包括：  　　1.无形资产的类别、用途、适用行业、预期收益；  　　2.无形资产的开发投资、转让条件、独占程度、可替代性、受有关国家法律保护的程度及期限、地理位置、使用年限、研发阶段、维护改良及更新的权利、受让成本和费用、功能风险情况、摊销方法以及其他影响其价值发生实质变动的特殊因素等。  　　（四）资金融通，包括融资的金额、币种、期限、担保、融资人的资信、还款方式、计息方法等;  　　（五）劳务交易，包括劳务性质、技术要求、专业水准、承担责任、付款条件和方式、直接和间接成本等。  　　关联交易与非关联交易在以上方面存在重大差异的，应当就该差异对价格的影响进行合理调整，无法合理调整的，应当选择其他合理的转让定价方法。  　　第十八条 再销售价格法以关联方购进商品再销售给非关联方的价格减去可比非关联交易毛利后的金额作为关联方购进商品的公平成交价格。其计算公式如下：  　　公平成交价格=再销售给非关联方的价格×（1-可比非关联交易毛利率）  　　可比非关联交易毛利率=可比非关联交易毛利/可比非关联交易收入净额×100%  　　再销售价格法一般适用于再销售者未对商品进行改变外形、性能、结构或者更换商标等实质性增值加工的简单加工或者单纯购销业务。  　　再销售价格法的可比性分析，应当特别考察关联交易与非关联交易中企业执行的功能、承担的风险、使用的资产和合同条款上的差异，以及影响毛利率的其他因素，具体包括营销、分销、产品保障及服务功能，存货风险，机器、设备的价值及使用年限，无形资产的使用及价值，有价值的营销型无形资产，批发或者零售环节，商业经验，会计处理及管理效率等。  　　关联交易与非关联交易在以上方面存在重大差异的，应当就该差异对毛利率的影响进行合理调整，无法合理调整的，应当选择其他合理的转让定价方法。  　　第十九条 成本加成法以关联交易发生的合理成本加上可比非关联交易毛利后的金额作为关联交易的公平成交价格。其计算公式如下：  　　公平成交价格=关联交易发生的合理成本×（1+可比非关联交易成本加成率）  　　可比非关联交易成本加成率=可比非关联交易毛利/可比非关联交易成本×100%  　　成本加成法一般适用于有形资产使用权或者所有权的转让、资金融通、劳务交易等关联交易。  　　成本加成法的可比性分析，应当特别考察关联交易与非关联交易中企业执行的功能、承担的风险、使用的资产和合同条款上的差异，以及影响成本加成率的其他因素，具体包括制造、加工、安装及测试功能，市场及汇兑风险，机器、设备的价值及使用年限，无形资产的使用及价值，商业经验，会计处理，生产及管理效率等。  　　关联交易与非关联交易在以上方面存在重大差异的，应当就该差异对成本加成率的影响进行合理调整，无法合理调整的，应当选择其他合理的转让定价方法。  　　第二十条 交易净利润法以可比非关联交易的利润指标确定关联交易的利润。利润指标包括息税前利润率、完全成本加成率、资产收益率、贝里比率等。具体计算公式如下：  　　（一）息税前利润率=息税前利润/营业收入×100%  　　（二）完全成本加成率=息税前利润/完全成本×100%  　　（三）资产收益率=息税前利润/[（年初资产总额+年末资产总额）/2]×100%  　　（四）贝里比率=毛利/（营业费用+管理费用）×100%  　　利润指标的选取应当反映交易各方执行的功能、承担的风险和使用的资产。利润指标的计算以企业会计处理为基础，必要时可以对指标口径进行合理调整。  　　交易净利润法一般适用于不拥有重大价值无形资产企业的有形资产使用权或者所有权的转让和受让、无形资产使用权受让以及劳务交易等关联交易。  　　交易净利润法的可比性分析，应当特别考察关联交易与非关联交易中企业执行的功能、承担的风险和使用的资产,经济环境上的差异，以及影响利润的其他因素，具体包括行业和市场情况，经营规模，经济周期和产品生命周期，收入、成本、费用和资产在各交易间的分配，会计处理及经营管理效率等。  　　关联交易与非关联交易在以上方面存在重大差异的，应当就该差异对利润的影响进行合理调整，无法合理调整的，应当选择其他合理的转让定价方法。  　　第二十一条 利润分割法根据企业与其关联方对关联交易合并利润（实际或者预计）的贡献计算各自应当分配的利润额。利润分割法主要包括一般利润分割法和剩余利润分割法。  　　一般利润分割法通常根据关联交易各方所执行的功能、承担的风险和使用的资产，采用符合独立交易原则的利润分割方式，确定各方应当取得的合理利润；当难以获取可比交易信息但能合理确定合并利润时，可以结合实际情况考虑与价值贡献相关的收入、成本、费用、资产、雇员人数等因素，分析关联交易各方对价值做出的贡献，将利润在各方之间进行分配。  　　剩余利润分割法将关联交易各方的合并利润减去分配给各方的常规利润后的余额作为剩余利润，再根据各方对剩余利润的贡献程度进行分配。  　　利润分割法一般适用于企业及其关联方均对利润创造具有独特贡献，业务高度整合且难以单独评估各方交易结果的关联交易。利润分割法的适用应当体现利润应在经济活动发生地和价值创造地征税的基本原则。  　　利润分割法的可比性分析，应当特别考察关联交易各方执行的功能、承担的风险和使用的资产，收入、成本、费用和资产在各方之间的分配，成本节约、市场溢价等地域特殊因素，以及其他价值贡献因素，确定各方对剩余利润贡献所使用的信息和假设条件的可靠性等。  　　第二十二条 其他符合独立交易原则的方法包括成本法、市场法和收益法等资产评估方法，以及其他能够反映利润与经济活动发生地和价值创造地相匹配原则的方法。  　　成本法是以替代或者重置原则为基础，通过在当前市场价格下创造一项相似资产所发生的支出确定评估标的价值的评估方法。成本法适用于能够被替代的资产价值评估。  　　市场法是利用市场上相同或者相似资产的近期交易价格，经过直接比较或者类比分析以确定评估标的价值的评估方法。市场法适用于在市场上能找到与评估标的相同或者相似的非关联可比交易信息时的资产价值评估。  　　收益法是通过评估标的未来预期收益现值来确定其价值的评估方法。收益法适用于企业整体资产和可预期未来收益的单项资产评估。  　　第二十三条 税务机关分析评估被调查企业关联交易时，应当在分析评估交易各方功能风险的基础上，选择功能相对简单的一方作为被测试对象。  　　第二十四条 税务机关在进行可比性分析时，优先使用公开信息，也可以使用非公开信息。  　　第二十五条 税务机关分析评估被调查企业关联交易是否符合独立交易原则时，可以根据实际情况选择算术平均法、加权平均法或者四分位法等统计方法，逐年分别或者多年度平均计算可比企业利润或者价格的平均值或者四分位区间。  　　税务机关应当按照可比利润水平或者可比价格对被调查企业各年度关联交易进行逐年测试调整。  　　税务机关采用四分位法分析评估企业利润水平时，企业实际利润水平低于可比企业利润率区间中位值的，原则上应当按照不低于中位值进行调整。  　　第二十六条 税务机关分析评估被调查企业为其关联方提供的来料加工业务，在可比企业不是相同业务模式，且业务模式的差异会对利润水平产生影响的情况下，应当对业务模式的差异进行调整，还原其不作价的来料和设备价值。企业提供真实完整的来料加工产品整体价值链相关资料，能够反映各关联方总体利润水平的，税务机关可以就被调查企业与可比企业因料件还原产生的资金占用差异进行可比性调整，利润水平调整幅度超过10%的，应当重新选择可比企业。  　　除本条第一款外，对因营运资本占用不同产生的利润差异不作调整。  　　第二十七条 税务机关分析评估被调查企业关联交易是否符合独立交易原则时，选取的可比企业与被调查企业处于不同经济环境的，应当分析成本节约、市场溢价等地域特殊因素，并选择合理的转让定价方法确定地域特殊因素对利润的贡献。  第二十八条 企业为境外关联方从事来料加工或者进料加工等单一生产业务，或者从事分销、合约研发业务，原则上应当保持合理的利润水平。  　　上述企业如出现亏损，无论是否达到《国家税务总局关于完善关联申报和同期资料管理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42号）中的同期资料准备标准，均应当就亏损年度准备同期资料本地文档。税务机关应当重点审核上述企业的本地文档，加强监控管理。  　　上述企业承担由于决策失误、开工不足、产品滞销、研发失败等原因造成的应当由关联方承担的风险和损失的，税务机关可以实施特别纳税调整。  　　第二十九条 税务机关对关联交易进行调查分析时，应当确定企业所获得的收益与其执行的功能或者承担的风险是否匹配。  　　企业与其关联方之间隐匿关联交易直接或者间接导致国家总体税收收入减少的，税务机关可以通过还原隐匿交易实施特别纳税调整。  　　企业与其关联方之间抵消关联交易直接或者间接导致国家总体税收收入减少的，税务机关可以通过还原抵消交易实施特别纳税调整。  　　第三十条 判定企业及其关联方对无形资产价值的贡献程度及相应的收益分配时，应当全面分析企业所属企业集团的全球营运流程，充分考虑各方在无形资产开发、价值提升、维护、保护、应用和推广中的价值贡献，无形资产价值的实现方式，无形资产与集团内其他业务的功能、风险和资产的相互作用。  　　企业仅拥有无形资产所有权而未对无形资产价值做出贡献的，不应当参与无形资产收益分配。无形资产形成和使用过程中，仅提供资金而未实际执行相关功能和承担相应风险的，应当仅获得合理的资金成本回报。  　　第三十一条 企业与其关联方转让或者受让无形资产使用权而收取或者支付的特许权使用费，应当根据下列情形适时调整，未适时调整的，税务机关可以实施特别纳税调整：  　　（一）无形资产价值发生根本性变化；  　　（二）按照营业常规，非关联方之间的可比交易应当存在特许权使用费调整机制；  　　（三）无形资产使用过程中，企业及其关联方执行的功能、承担的风险或者使用的资产发生变化；  　　（四）企业及其关联方对无形资产进行后续开发、价值提升、维护、保护、应用和推广做出贡献而未得到合理补偿。  　　第三十二条 企业与其关联方转让或者受让无形资产使用权而收取或者支付的特许权使用费，应当与无形资产为企业或者其关联方带来的经济利益相匹配。与经济利益不匹配而减少企业或者其关联方应纳税收入或者所得额的，税务机关可以实施特别纳税调整。未带来经济利益，且不符合独立交易原则的，税务机关可以按照已税前扣除的金额全额实施特别纳税调整。  　　企业向仅拥有无形资产所有权而未对其价值创造做出贡献的关联方支付特许权使用费，不符合独立交易原则的，税务机关可以按照已税前扣除的金额全额实施特别纳税调整。  　　第三十三条 企业以融资上市为主要目的在境外成立控股公司或者融资公司，仅因融资上市活动所产生的附带利益向境外关联方支付特许权使用费，不符合独立交易原则的，税务机关可以按照已税前扣除的金额全额实施特别纳税调整。  　　第三十四条 企业与其关联方发生劳务交易支付或者收取价款不符合独立交易原则而减少企业或者其关联方应纳税收入或者所得额的，税务机关可以实施特别纳税调整。  　　符合独立交易原则的关联劳务交易应当是受益性劳务交易，并且按照非关联方在相同或者类似情形下的营业常规和公平成交价格进行定价。受益性劳务是指能够为劳务接受方带来直接或者间接经济利益，且非关联方在相同或者类似情形下，愿意购买或者愿意自行实施的劳务活动。  　　第三十五条 企业向其关联方支付非受益性劳务的价款，税务机关可以按照已税前扣除的金额全额实施特别纳税调整。非受益性劳务主要包括以下情形：  　　（一）劳务接受方从其关联方接受的，已经购买或者自行实施的劳务活动；  　　（二）劳务接受方从其关联方接受的，为保障劳务接受方的直接或者间接投资方的投资利益而实施的控制、管理和监督等劳务活动。该劳务活动主要包括：  　　1.董事会活动、股东会活动、监事会活动和发行股票等服务于股东的活动；  　　2.与劳务接受方的直接或者间接投资方、集团总部和区域总部的经营报告或者财务报告编制及分析有关的活动；  　　3.与劳务接受方的直接或者间接投资方、集团总部和区域总部的经营及资本运作有关的筹资活动；  　　4.为集团决策、监管、控制、遵从需要所实施的财务、税务、人事、法务等活动；  　　5.其他类似情形。  　　（三）劳务接受方从其关联方接受的，并非针对其具体实施的，只是因附属于企业集团而获得额外收益的劳务活动。该劳务活动主要包括：  　　1.为劳务接受方带来资源整合效应和规模效应的法律形式改变、债务重组、股权收购、资产收购、合并、分立等集团重组活动；  　　2.由于企业集团信用评级提高，为劳务接受方带来融资成本下降等利益的相关活动；  　　3.其他类似情形。  　　（四）劳务接受方从其关联方接受的，已经在其他关联交易中给予补偿的劳务活动。该劳务活动主要包括：  　　1.从特许权使用费支付中给予补偿的与专利权或者非专利技术相关的服务；  　　2.从贷款利息支付中给予补偿的与贷款相关的服务；  　　3.其他类似情形。  　　（五）与劳务接受方执行的功能和承担的风险无关，或者不符合劳务接受方经营需要的关联劳务活动；  　　（六）其他不能为劳务接受方带来直接或者间接经济利益，或者非关联方不愿意购买或者不愿意自行实施的关联劳务活动。  　　第三十六条 企业接受或者提供的受益性劳务应当充分考虑劳务的具体内容和特性，劳务提供方的功能、风险、成本和费用，劳务接受方的受益情况、市场环境，交易双方的财务状况，以及可比交易的定价情况等因素，按照本办法的有关规定选择合理的转让定价方法，并遵循以下原则：  　　（一）关联劳务能够分别按照各劳务接受方、劳务项目为核算单位归集相关劳务成本费用的，应当以劳务接受方、劳务项目合理的成本费用为基础，确定交易价格；  　　（二）关联劳务不能分别按照各劳务接受方、劳务项目为核算单位归集相关劳务成本费用的，应当采用合理标准和比例向各劳务接受方分配，并以分配的成本费用为基础，确定交易价格。分配标准应当根据劳务性质合理确定，可以根据实际情况采用营业收入、营运资产、人员数量、人员工资、设备使用量、数据流量、工作时间以及其他合理指标，分配结果应当与劳务接受方的受益程度相匹配。非受益性劳务的相关成本费用支出不得计入分配基数。  　　第三十七条 企业向未执行功能、承担风险，无实质性经营活动的境外关联方支付费用，不符合独立交易原则的，税务机关可以按照已税前扣除的金额全额实施特别纳税调整。  　　第三十八条 实际税负相同的境内关联方之间的交易，只要该交易没有直接或者间接导致国家总体税收收入的减少，原则上不作特别纳税调整。  　　第三十九条 经调查，税务机关未发现企业存在特别纳税调整问题的，应当作出特别纳税调查结论，并向企业送达《特别纳税调查结论通知书》。  　　第四十条 经调查，税务机关发现企业存在特别纳税调整问题的，应当按照以下程序实施调整：  　　（一）在测算、论证、可比性分析的基础上，拟定特别纳税调查调整方案；  　　（二）根据拟定调整方案与企业协商谈判，双方均应当指定主谈人，调查人员应当做好《协商内容记录》，并由双方主谈人签字确认。企业拒签的，税务机关调查人员（两名以上）应当注明。企业拒绝协商谈判的，税务机关向企业送达《特别纳税调查初步调整通知书》；  　　（三）协商谈判过程中，企业对拟定调整方案有异议的，应当在税务机关规定的期限内进一步提供相关资料。税务机关收到资料后，应当认真审议，并作出审议结论。根据审议结论，需要进行特别纳税调整的，税务机关应当形成初步调整方案，向企业送达《特别纳税调查初步调整通知书》；  　　（四）企业收到《特别纳税调查初步调整通知书》后有异议的，应当自收到通知书之日起7日内书面提出。税务机关收到企业意见后，应当再次协商、审议。根据审议结论，需要进行特别纳税调整，并形成最终调整方案的，税务机关应当向企业送达《特别纳税调查调整通知书》；  　　（五）企业收到《特别纳税调查初步调整通知书》后，在规定期限内未提出异议的，或者提出异议后又拒绝协商的，或者虽提出异议但经税务机关审议后不予采纳的，税务机关应当以初步调整方案作为最终调整方案，向企业送达《特别纳税调查调整通知书》。  　　第四十一条 企业收到《特别纳税调查调整通知书》后有异议的，可以在依照《特别纳税调查调整通知书》缴纳或者解缴税款、利息、滞纳金或者提供相应的担保后，依法申请行政复议。  　　企业收到国家税务局送达的《特别纳税调查调整通知书》后有异议的，向其上一级国家税务局申请行政复议；企业收到地方税务局送达的《特别纳税调查调整通知书》后有异议的，可以选择向其上一级地方税务局或者本级人民政府申请行政复议。  　　对行政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第四十二条 税务机关对企业实施特别纳税调整，涉及企业向境外关联方支付利息、租金、特许权使用费的，除另有规定外，不调整已扣缴的税款。  　　第四十三条 企业可以在《特别纳税调查调整通知书》送达前自行缴纳税款。企业自行缴纳税款的，应当填报《特别纳税调整自行缴纳税款表》。  　　第四十四条 税务机关对企业实施特别纳税调整的，应当根据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的有关规定对2008年1月1日以后发生交易补征的企业所得税按日加收利息。  　　特别纳税调查调整补缴的税款，应当按照应补缴税款所属年度的先后顺序确定补缴税款的所属年度，以入库日为截止日，分别计算应加收的利息额：  　　（一）企业在《特别纳税调查调整通知书》送达前缴纳或者送达后补缴税款的，应当自税款所属纳税年度的次年6月1日起至缴纳或者补缴税款之日止计算加收利息。企业超过《特别纳税调查调整通知书》补缴税款期限仍未缴纳税款的，应当自补缴税款期限届满次日起按照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的有关规定加收滞纳金，在加收滞纳金期间不再加收利息；  　　（二）利息率按照税款所属纳税年度12月31日公布的与补税期间同期的中国人民银行人民币贷款基准利率（以下简称基准利率）加5个百分点计算，并按照一年365天折算日利息率；  　　（三）企业按照有关规定提供同期资料及有关资料的，或者按照有关规定不需要准备同期资料但根据税务机关要求提供其他相关资料的，可以只按照基准利率加收利息。  　　经税务机关调查，企业实际关联交易额达到准备同期资料标准，但未按照规定向税务机关提供同期资料的，税务机关补征税款加收利息，适用本条第二款第二项规定。  　　第四十五条 企业自行调整补税且主动提供同期资料等有关资料，或者按照有关规定不需要准备同期资料但根据税务机关要求提供其他相关资料的，其2008年1月1日以后发生交易的自行调整补税按照基准利率加收利息。  　　第四十六条 被调查企业在税务机关实施特别纳税调查调整期间申请变更经营地址或者注销税务登记的，税务机关在调查结案前原则上不予办理税务变更、注销手续。  　　第四十七条 根据我国对外签署的税收协定的有关规定，国家税务总局可以依据企业申请或者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请求启动相互协商程序，与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开展协商谈判,避免或者消除由特别纳税调整事项引起的国际重复征税。  　　相互协商内容包括:  　　（一）双边或者多边预约定价安排的谈签；  　　（二）税收协定缔约一方实施特别纳税调查调整引起另一方相应调整的协商谈判。  　　第四十八条 企业申请启动相互协商程序的，应当在税收协定规定期限内，向国家税务总局书面提交《启动特别纳税调整相互协商程序申请表》和特别纳税调整事项的有关说明。企业当面报送上述资料的，以报送日期为申请日期；邮寄报送的，以国家税务总局收到上述资料的日期为申请日期。  　　国家税务总局收到企业提交的上述资料后，认为符合税收协定有关规定的，可以启动相互协商程序；认为资料不全的，可以要求企业补充提供资料。  　　第四十九条 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请求启动相互协商程序的，国家税务总局收到正式来函后，认为符合税收协定有关规定的，可以启动相互协商程序。  　　国家税务总局认为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提供的资料不完整、事实不清晰的，可以要求对方补充提供资料，或者通过主管税务机关要求涉及的境内企业协助核实。  　　第五十条 国家税务总局决定启动相互协商程序的，应当书面通知省税务机关，并告知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负责特别纳税调整事项的主管税务机关应当在收到书面通知后15个工作日内，向企业送达启动相互协商程序的《税务事项通知书》。  　　第五十一条 在相互协商过程中，税务机关可以要求企业进一步补充提供资料，企业应当在规定的时限内提交。  　　第五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国家税务总局可以拒绝企业申请或者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启动相互协商程序的请求：  　　（一）企业或者其关联方不属于税收协定任一缔约方的税收居民；  　　（二）申请或者请求不属于特别纳税调整事项；  　　（三）申请或者请求明显缺乏事实或者法律依据；  　　（四）申请不符合税收协定有关规定；  　　（五）特别纳税调整案件尚未结案或者虽然已经结案但是企业尚未缴纳应纳税款。  　　第五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国家税务总局可以暂停相互协商程序：  　　（一）企业申请暂停相互协商程序；  　　（二）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请求暂停相互协商程序；  　　（三）申请必须以另一被调查企业的调查调整结果为依据，而另一被调查企业尚未结束调查调整程序；  　　（四）其他导致相互协商程序暂停的情形。  　　第五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国家税务总局可以终止相互协商程序：  　　（一）企业或者其关联方不提供与案件有关的必要资料，或者提供虚假、不完整资料，或者存在其他不配合的情形；  　　（二）企业申请撤回或者终止相互协商程序；  　　（三）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撤回或者终止相互协商程序；  　　（四）其他导致相互协商程序终止的情形。  　　第五十五条 国家税务总局决定暂停或者终止相互协商程序的，应当书面通知省税务机关。负责特别纳税调整事项的主管税务机关应当在收到书面通知后15个工作日内，向企业送达暂停或者终止相互协商程序的《税务事项通知书》。  　　第五十六条 国家税务总局与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签署相互协商协议后，应当书面通知省税务机关，附送相互协商协议。负责特别纳税调整事项的主管税务机关应当在收到书面通知后15个工作日内，向企业送达《税务事项通知书》，附送相互协商协议。需要补（退）税的，应当附送《特别纳税调整相互协商协议补（退）税款通知书》或者《预约定价安排补（退）税款通知书》，并监控执行补（退）税款情况。  　　应纳税收入或者所得额以外币计算的，应当按照相互协商协议送达企业之日上月最后一日人民币汇率中间价折合成人民币，计算应补缴或者应退还的税款。  　　补缴税款应当加收利息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第一百二十二条规定的人民币贷款基准利率执行。  　　第五十七条 各级税务机关应当对税收协定缔约对方税务主管当局、企业或者其扣缴义务人、代理人等在相互协商中提供的有关资料保密。  　　第五十八条 企业或者其扣缴义务人、代理人等在相互协商中弄虚作假，或者有其他违法行为的，税务机关应当按照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的有关规定处理。  　　第五十九条 企业按照本办法规定向国家税务总局提起相互协商申请的，提交的资料应当同时采用中文和英文文本，企业向税收协定缔约双方税务主管当局提交资料内容应当保持一致。  　　第六十条 涉及税收协定条款解释或者执行的相互协商程序，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税收协定相互协商程序实施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56号）的有关规定执行。  　　第六十一条 本办法施行前已受理但尚未达成一致的相互协商案件，适用本办法的规定。  第六十二条 本办法自2017年5月1日起施行。《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试行）》（国税发〔2009〕2号文件印发）第四章、第五章、第十一章和第十二章、《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转让定价跟踪管理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9〕188号）、《国家税务总局关于强化跨境关联交易监控和调查的通知》（国税函〔2009〕363号）、《国家税务总局关于特别纳税调整监控管理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54号）、《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向境外关联方支付费用有关企业所得税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16号）同时废止。  附件： 附件：1.[特别纳税调整自行缴纳税款表](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356)  　　　2.[关联关系认定表](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365)  　　　3.[关联交易认定表](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369)  　　　4.[特别纳税调查结论通知书](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359)  　　　5.[协商内容记录](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360)  　　　6.[特别纳税调查初步调整通知书](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361)  　　　7.[特别纳税调查调整通知书](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362)  　　　8.[启动特别纳税调整相互协商程序申请表](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363)  　　　9.[特别纳税调整相互协商协议补（退）税款通知书](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364) |